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. 4. 19 선고 2022가단7815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3. 8.

판 결 선 고 2023. 4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5. 7. 24. 접수 제672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이 원고 소유인 사실, 원고가 1995. 7. 22.경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5. 7. 24. 접수 제67253호로 채권최고액 15,000,000원, 채무자 원고로 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’라 한다)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대여금 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5. 7. 24.부터 10년이 경과한 2005. 7. 24.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규봉

별지